

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점용허가 신청 및 권리·의무 승계신고 등 「농어촌도로 정비법」에 따라 수집하는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를 위한 근거 마련

2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 / 0000부 합의 완료(00.00.00)

라. 기 타 : 입법예고(2021.11.8.~12.20.) 예정

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무
2. 법 제18조의2에 따른 권리·의무 승계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무
3. 법 제19조에 따른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무
4. 법 제20조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설>	제18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1. 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무 2. 법 제18조의2에 따른 권리·의무 승계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무 3. 법 제19조에 따른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무 4. 법 제20조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